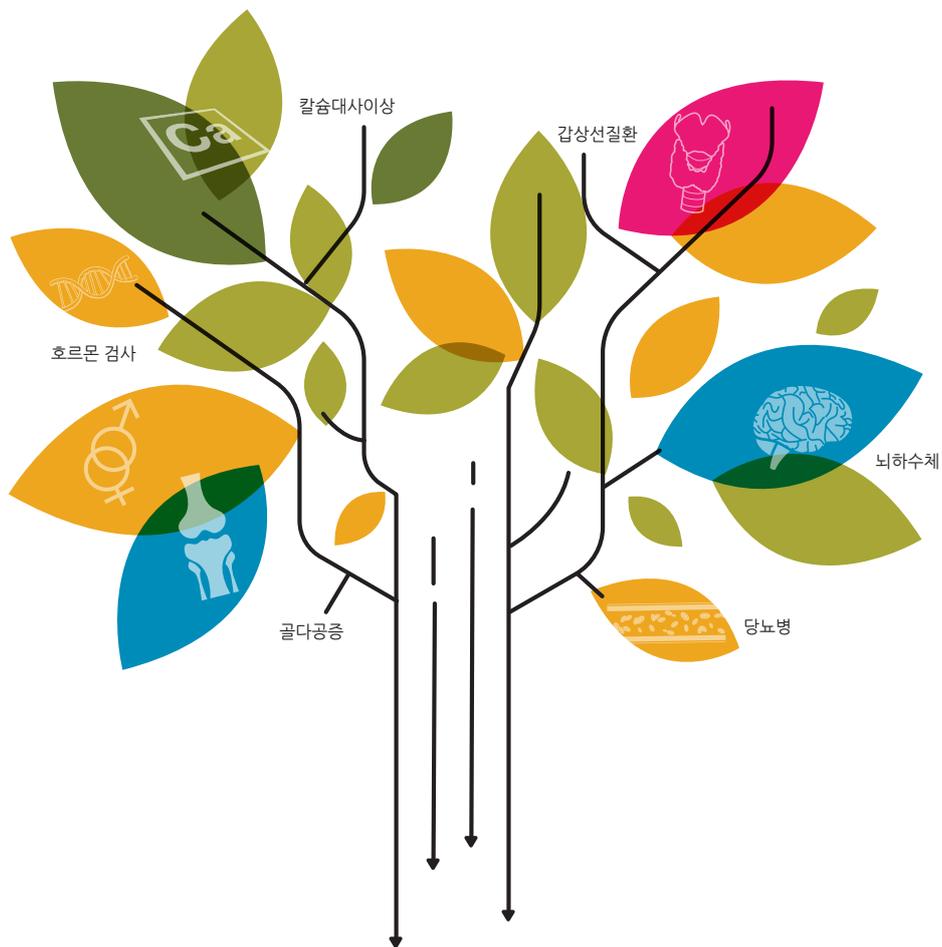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삭감 사례집

Korean Endocrine Society



Insurance **C**utback
Casebook



대한내분비학회

01 당뇨병

중분류	검사
소분류	당화혈색소
보험코드	C3825
상대가치점수	103.57 (1차), 97.78 (2차)

사례

2016년 2월 초 건강검진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6.6%, 공복혈당 121 mg/dl로 당뇨병이 의심되어 2016년 2월 17일 내원, 당일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하고 생활습관 관리를 한 뒤 3개월 후 재검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5월 12일 혈액검사 시행함. 당화혈색소 검사가 이전과 90일 미만 간격으로 시행되어 삭감되었음.

보험지침 및 삭감사유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당화혈색소 (Hemoglobin A1c) 검사와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가. 당화혈색소 검사는 혈당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2017년 4월 고시변경).
- 나. Fructosamine 검사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보험위원회 검토 의견

당화혈색소는 3개월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정해진 기간 이전에 검사를 먼저하고 외래 진료에 오는 경우나 외래 일정이 당겨진 경우 등 1~2주 간격의 차이로 인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사평가원과 논의를 통해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17년 4월부터는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하기로 함. 다만 타병원에서 시행한 횟수까지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어 향후 사례취합이 필요하겠음.

당뇨병 진단명 외에도 내당능장애, 공복혈당장애, 고혈당을 진단명으로 입력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음.

01 골다공증, 칼슘대사이상

중분류	검사
소분류	골밀도검사
보험코드	HC341 (1부위), HC342 (2부위 이상), HC343 (QCT)
상대가치점수	1차:449.33 (1부위), 531.08 (2부위 이상), 470.05 (QCT) 2차: 440.33 (1부위), 520.67 (2부위 이상), 448.68 (QCT)

사례

2015년 11월 2일 골밀도검사를 시행한 환자에게 2016년 11월 4일 검사를 예약해 주었으나 환자가 2016년 10월 26일 골밀도검사를 시행하였음. 이전년도와 1년미만 간격으로 검사가 시행되어 2016년 시행한 골밀도검사가 삭감됨.

보험지침 및 삭감사유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적응증

-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 2) 고위험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산정횟수

- 1) 진단 시
 -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 2) 추적검사
 -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시행함.

-아 래 -

-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T-score ≤ -3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 관련근거: 고시 제2007-92호 (2007.11.1 시행)

보험위원회 검토 의견

현재 골밀도검사는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경우 보험인정이 됨.

단 본 경우와 같이 검사 일정이 조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의 삭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에서 심사평가원에 검사시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11~13개월 정도로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중임.

현재까지는 정해진 기간을 맞추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환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